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	대출종류	차입금	1월	2월	3월		
취급기관	상품명	고정금리 차입금	4월	5월	6월	연간	소득공제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주택취득일/저당권설정일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7월	8월	9월	연간 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최초차입일/최종상환예정일 (상환기간)	당해년 원금상환액	10월	11월	12월		
	해당없음	25,000,000	217,826	106,752	118,050		
│ □ 새마을금고	주택자금대출(주택구입자금대출)	0	217,826	106,752	118,050	1 770 512	1 770 512
(209-06-29912)	2019-08-30/2019-08-31	25,000,000	217,826	106,752	118,050	1,770,512	1,770,512
	2019-08-31/2039-08-31 (20 년)	0	217,826	106,752	118,050		

- 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	대출종류	차입금	1월	2월	3월		소득공제
취급기관	상품명	고정금리 차입금	4월	5월	6월	연간 합계액	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주택취득일/저당권설정일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7월	8월	9월	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최초차입일/최종상환예정일 (상환기간)	당해년 원금상환액	10월	11월	12월		
	해당없음	0	597,917	597,917	540,054		
JM 은행(주)	주택자금대출	0	597,917	578,630	620,339	7,167,652	5,000,000
(104-86-39742)	2012-10-31/2012-10-16	0	600,328	620,339	620,339	7,107,032	3,000,000
	2015-05-15/2035-05-15 (20 년)	0	600,328	620,339	573,205		

- 1. 공제 대상 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사업자번호	5월	6월	7월	8월	상환액계
계좌번호	대출일	9월	10월	11월	12월	
(주)OU은행		0	0	252,620	126,310	
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	201-81-02819	126,310	126,310	126,310	126,310	1,515,720
132040****	2010-05-31	126,310	252,620	0	252,620	
FGF 은행		108,778	108,778	108,778	108,778	
KB 나라사랑대출 (주택전세자금)	201-81-68693	108,778	108,778	108,778	108,778	1,984,847
648009****	2016-07-28	108,778	656,208	175,759	173,878	
FGF 은행		268,017	268,017	268,017	269,744	
KB 주택전세자금대출	201-81-68693	269,744	269,744	269,744	269,744	3,223,401
648009****	2016-08-26	269,744	266,962	266,962	266,962	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
- ※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명의여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%
- ※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사업자번호	5월	6월	7월	8월	상환액계
계좌번호	대출일	9월	10월	11월	12월	
합 계						6,723,968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
- ※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명의여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%

-4-

※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(월별)내역 [월세액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임차인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고길동	750101-*****

■ 월세액 지급내역 (단위:원)

임대인 성명(상호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	1월	2월	3월	4월	
계약면적(m²)	임대차 계약기간	5월	6월	7월	8월	지급액 계
계약	서상 주소지	9월	10월	11월	12월	
주인장	870330-*****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
57	2019-05-01 ~ 2020-04-30	0	0	0	0	8,000,000
서울특별시 강남-	구 아파트 2016동 8104호	0	0	0	0	
주인장	870330-****	0	0	0	0	
57	2020-05-01 ~ 2021-04-3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6,000,000
서울특별시 강남-	구 아파트 2016동 8104호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
	합 계					24,000,000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)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 ※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
- 3. 공제율 : 10%. 단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)는 12%
- 4. '월세액 세액공제'와 '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'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'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' 대상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